

관계기관 의견조회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

2016. 1.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1. 개정 목적

- 금번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보상금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

*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원 구성, 모돈·한우·종계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개선, 살처분 가금농장의 생계안정비용 지급기한 연장 및 살처분 마릿수 산정방법 개선 등

2. 주요 개정사항

□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원 추가 구성

- (개정사유) 현 보상금 평가반원은 공무원, 공수의, 축협 등으로 구성되어 발생 당시 현장을 잘 아는* 평가반원 추가구성 필요

* 살처분 당시 방역장비 구비, 소독실시 여부 등을 파악하여 감액기준 등 적용 필요

- (개정내용) 초동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 방역사를 평가반원에 추가

현행	개정안
5조(보상금 평가반) ① ~ ② (생략)	5조(보상금 평가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 ----- ----- -----.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1. -----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 ----- -----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에는 보건환경연	3. ----- -----

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 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 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위생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 ----- ----- ----- -----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신 설>	4. ----- 5. <u>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u>

□ 모돈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준 및 방법 일부 변경

- (개정사유) 모돈의 종부전까지 사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번식돈 사육비가 필요하나, 통계청은 '03년 이후 번식돈 사육비를 조사하지 않아 기준 마련 필요

*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사육비 ÷ 365 ×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개정내용)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비육돈 사육비에 550%*를 적용하여 산정

* 3년간('00~'0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번식돈 사육비는 비육돈 사육비의 550%로 조사됨

현 행	개 정 안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 다 (생 략)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시 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 비를 적용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 -----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u>이용하되, 번식돈사육비의 통계수 치가 없을 경우 비육돈사육비에 550%를 적용하여 산출</u>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 방역상 긴급하게 살처분한 한우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방법 변경

- (개정사유) 방역상 긴급하게 살처분한 소는 개체별 체중을 측정한 자료가 없어, 합리적인 체중 적용 방법 필요
- (개정내용) 축산과학원에서 제시하는 발육차이를 고려한 월령별 한우표준체중을 적용하여 합리적 보상금 산출 및 지급

* '12년 농촌진흥사업 연구과제(세부과제명: 한우 성별 및 사양방법에 따른 발육기준 개발)로 선정 및 추진되어 '13년 정책제안

현행	개정안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u>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며 실측한 개체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 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한다.</u> - 돼지 (생 략)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u>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u> 1.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했을 경우 :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적용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 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를 적용 - 돼지 (현행과 같음)

□ 육우 암소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 (개정사유) 육우 암소 거래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육우 암소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마련 필요

* 지자체는 육우 암소를 비거세우 또는 젖소(미경산우) 가격으로 산정·지급하고 있음

○ (개선사항) 육우 암소 살처분보상금은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암소 평균농가수취가격으로 지급

* 육우 암소 평균농가수취가격은 비거세우 또는 거세우와 같이 「농축산물유통정보 조사 요령」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한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기초로 산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1. -----			
축종별	구분	상한가격	비고	축종별	구분	상한가격	비고
육우	유사산태아 비거세우	젖소에 준하여 지급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 가격 기준(600kg비거세 우의 kg당 가격을 기준 으로 산정)		육우	유사산태아 비거세우	젖소에 준하여 지급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 가격 기준(600kg비거세 우의 kg당 가격을 기준 으로 산정)	
	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 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 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육우임신우	체중kg × 육우 비거세 우의 kg당 가격 + 젖소 초유떼기가격 × 살처분 당시 개월수/10.25개월			육우임신우	체중kg × 육우 암소의 kg당 가격 + 젖소 초유 떼기가격 × 살처분 당시 개월수/10.25개월	
	<신설>	<신설>			육우암소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암소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AI 살처분 가금농장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한 연장

- (개정사유) AI 발생농장의 분변처리 등 사후관리 및 입식시험 승인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져서 살처분 농장 생계 유지를 위한 지급 기한 연장 필요

* 사육동수가 많은 육용오리의 경우 31~181일까지도 소요되어 이후 입식 가축 시험(3주) 등 재입식 최종허용까지 80~230일까지도 소요됨

- (개선사항)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생계안정비용 지급

현행	개정안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 (제13조 관련)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 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신설>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2. ----- □ ----- ○ ----- ----- ----- ----- ----- ----- - 다만,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방역지역내 추가발생 또는 사육동수가 많아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 이 경우 관할 시·군·구는 농가로 하여금 재입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 일부문구수정(별표 2. 도태장려금 지급기준)

○ (개정사유) 협회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필요

○ (개선사항) 일부 문구 수정 등 용어의 명확화

현행				개정안			
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2. ----- -----			
축종별	구분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	비고	축종별	구분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	비고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양육협회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한국사슴협회</u>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 재검토기한 초과 고시 기한 재설정(부칙 개정)

○ (개정사유)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개선사항(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 검토)을 반영하여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

○ (개선사항) 재검토 기한 재설정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3. 추진 일정

- ☐ 의견수렴을 통한 고시개정(안) 마련('15.12~'16.1월)
- ☐ 규제 및 법제 심사 및 행정예고('16.1~2월)
- ☐ 고시안 확정 및 공포 등('16.2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03호, 2014.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0월 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 2012. 6. 2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61호

개정 2013. 5. 16,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8호

개정 2013. 11. 19,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95호

개정 2014. 12.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03호

개정 2016. 0. 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0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 가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

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가축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의 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장,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장,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위생사업소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 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가축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구청장·읍장·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그 소독사실을 기재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

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조치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 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이하 "시·군 및 구"라 한다)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위생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제6조(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록·투약증명서) 및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 및 매몰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 대상 가축 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된 가축
6.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② 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

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태권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병·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대상은 법 제49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가축 등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실제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자료 확보) 평가받은 보상금·도태장려금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체중, 두수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평가입증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살처분 또는 도태 전에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가격(생후 1주령) 암·수평균 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 /10.25개월]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수정단계 가격과 초임만삭 가격을 기준 으로 임신개월에 따라 산정	
	초임만삭(임신9개월 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2산우	초산우가격	
	3산우	초산우가격의 95%	
	4산우	농협조사 가격 기준	
	노산우(5산 이상)	(노페우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4산우 가격-노페우가격)÷2]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태아가격 [초유떼기(생후 1주령) 암·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 개월수+10.25개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 [(평균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 이용잔여년수의 1/2	가격산정기준 및 방법은 비고 5.에 의함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 평균 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 이용잔여년수×조정계수(0.99)]	상 동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입식제한기간×조정계수(0.99)]	상 동
젖소 종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 종축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하되 고능력우 보상을 받는 개체는 제외 [협의된 상한가격×이용잔여년수(월)/ 평균도태월령] -이용잔여년수(월) 및 평균도태월령은 고능력우 산정기준을 준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육우	유사산 태아	젖소에 준하여 지급	
	비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 가격 기준(600kg비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 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암소의 kg당 가격+젖소 초유떼기가격×살처분 당시 개월수/10.25개월)	
	육우 암소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암소의 평균농가 수취 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 (농협조사 산지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 개월수÷14.5개월	
	송아지(3개월이하)	(송아지월령+10개월(임신기간))÷14.5 개월×송아지 4~5개월 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4~5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6~7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6~7개월초과~600kg이하	농협조사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당해 가축의 체중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kg당 가격]	암·수 구분
	600kg초과	농협조사가격(600kg)+[(당해 가축의 체중kg-600kg) ×kg당 가격]	암·수 구분
	임신우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 : 농협 조사 산지가격×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 ÷14.5개월)	태아가격은 개복확인 또는 임신진단서가 있는 경우 100%, 인공수정 증명서만 있는 경우 70%
	거세우	체중구분별 한우 수소가격×1.2	
	월령에 따른 평가액 상한선 조정	-60개월령까지는 평가상한가격의 100% 적용 -61~119개월령은 매1개월 증가 시마다 평가상한가격의 1%씩 감액 적용 -120개월령 이상은 평가상한가격의 40% 적용	종축(고등등록우) 제외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	체중 × kg당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등등록우)		종축(고등등록우)에 한함
한우 종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한우 종축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4주이내) 이유(4-8주) 자돈(9-10주)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 · 성돈(61kg초과)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 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 하는 모돈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 · 웅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 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 하는 종돈 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 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 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 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수를 적용 자돈가격(30kg기준)+(당해체중-30kg)× [110kg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 가격(30kg기준)]/80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균 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250,000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 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후보종모돈 구입비+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 채취 전 사육비-감가상각비+정액 잔존 가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 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 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 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 협회가 종돈으로 인정 한 것

개	어린 개	시가평가액	거래영수증 등 확인 사육일지 또는 임신감정 등을 통해 임신 확인
	성견	시가평가액(최고한도는 10만원) -임신태아 가격 : 젓먹이 강아지 가격의 1/2를 평균산자수에 일률 적용	
닭	병아리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산란용·육용) 기준 단, 원종계는 수입 면장 또는 세급계산서 기준, 산란용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시 구입처의 세급계산서 기준, 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시 구입처의 세급계산서 기준으로 하되, 면세법인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도 인정	종계(산란용·육용·토종닭) · 실용계(산란용·육용· 토종닭)를 구분하여 평가
	산란용 원종계·종계 - 초생추~27주령 미만 - 27주령 -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 78주령이상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 ×병아리가격의1/4×10%]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종계 노계) 기준	
	육용 원종계·종계 - 초생추~31주령미만 - 31주령 -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 70주령이상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 ×병아리 가격의 1/2× 10%]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종계 노계) 기준	
	토종닭 종계 - 초생추~25주령미만 - 25주령 - 25주령이상~80주령미만 - 80주령이상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 ×병아리 가격의1/2×10%] 21주령 상한가격과 8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종계 노계) 기준	
	육용 실용계		

	- 사육단계 - 출하단계 (평균출하일령 이후)	$\text{병아리가격} + \{(\text{산지가격} \times \text{출하체중}) - \text{병아리가격}\} / \text{평균출하일령} \times \text{당해개체일령}$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토종닭 실용계 - 사육단계 - 출하단계 (평균출하일령 이후)	$\text{병아리가격} + \{(\text{산지가격} \times \text{출하체중}) - \text{병아리가격}\} / \text{평균출하일령} \times \text{당해개체일령}$ ※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 기준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산란용 실용계 - 78주령까지 사육 • 병아리 ~ 10주령 미만 • 10주령 • 10주령 이상 ~ 21주령 미만 • 21주령 • 21주령 ~ 78주령 미만 • 78주령 이상 - 100주령까지 사육 • 병아리 ~ 10주령 미만 • 10주령 • 10주령 이상 ~ 21주령 미만 • 21주령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 × 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또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가격 × 10%)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중 산란노계 가격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325개 × 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또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가격 × 10%)	“브랜드란”은 상표등록된 알(납품받는 사업자가 상표등록한 경우 포함)을 말하며, 그 생산닭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기초하여 브랜드란 납품가격과 일반란 시세와의 차액 비율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산란용 종계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1주령~78주령미만 · 78주령이상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 (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중 산란노계 가격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 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브랜드란(전자상거래 포함)”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의한 납품가격 인정
오리	원종오리·종오리(PS) - 병아리 - 오리병아리~28주령 미만 - 28주령 - 28주령 이상~78주령 미만 - 78주령 이상	원종오리는 수입면장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종오리는 최근 거래기록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245개 ×병아리가격의1/2×10%) 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 단위로 산정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종오리의 경우 20주령 이내에 한하여 계통보 증서 인정
	육용오리 - 병아리 - 병아리~41일령 - 42일령 - 43일령이후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병아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산정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kg당 단가×일령)+마리당 당일 사료 가격 (농가의 사료구입 단가 적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있는 기능성 육용오리(무항생제 오리 등)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특수형태(약용) 육용오리(알 포함)의 경우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 후 7일 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사)한국오리협회 조사 산지가격 기준	
메추리	종축용 메추리		
	- 병아리	일반병아리의 125%	
	- 병아리~10주령미만	병아리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10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98개 ×병아리 가격의 1/2 ×10%]	
	- 10주령이상~24주령미만	10주령 상한가격과 24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4주령이상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실용메추리		
	- 병아리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 메추리병아리~7주령미만	병아리가격과 7주령 상한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알판매개수 260개× 농장별 판매 수취가격(거래처의 세금 계산서 또는 거래 영수증) ×10%]	
	- 7주령이상~62주령미만	7주령 상한가격과 62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62주령 이상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알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사)한국사슴협회 조사가격 기준	
	녹용	(사)한국사슴협회 조사 전년도 평균 도매가격	

기타 가축	산양·면양·노새·당나귀· 토끼·거위·칠면조 등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가격 (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기준	
----------	------------------------------	---	--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 육용오리 :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uck.org) 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소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com>) 하는 축산물가격정보의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com>) 하는 일별가격동향(도매시장 지육 경매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 기준 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 :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토종닭 :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nca.kr) 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슴 : (사)한국사슴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eer.or.kr)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가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 및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은 생산된 축산물의 최근 거래가격(세금 계산서)과 일반 축산물의 시세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일반 가축의 평가액 상한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거래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단, 구제역, AI 등 발생으로 가격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대폭 등락할 경우 살처분 직전 5개년 전국평균가격(물가상승률 감안) 중 최고·최저년도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pm 30\%$ 범위 내로 한다.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했을 경우 :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적용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를 적용

- 돼지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두수가 많거나 또는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양돈협회에서 제공하는 해당농가의 MSY를 적용한 돼지사육두수 및 구성비와 사료급여실적, 출하실적 등을 적용하여 두수 및 체중 산정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입식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비고 1. 돼지오제스키병 또는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웅돈 : 성돈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비고 2.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비고 3. 종계·종오리·종축용 메추리 및 종란기준

가. 종 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닭(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검정확인서나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닭,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나. 종오리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리(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 검정확인서나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오리,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 다. 종축용 메추리 : 번식용 메추리(농가에서 번식용으로 사육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함)
- 라. 종 란 : 종계 또는 종오리·종축용 메추리에서 생산된 알(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원종오리장 등에서 생산한 씨알에 한함)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중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중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이용하되,
번식돈사육비의 통계수치가 없을 경우 비육돈사육비에 550%를 적용하여 산출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5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비고 5. 젖소의 보상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 가. 분유떼기~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가격과 분유
 떼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다만, 분유떼기 월령은 2개월,
 수정단계는 14개월을 표준 월령으로 하여 가격 산정

나. 고능력우

- 인정기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농협젓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젓소로서, 최근 3개월의 검정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착유일) 검정성적 상위 50%의 평균 이상인 젓소
- 평균 초과산유량: 해당 개체의 전년도 1년간 총 산유량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젓소 두당 연간 평균 산유량을 뺀 유량
- 농가별 유대: 평가대상 젓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 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생산비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 당) 평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전년도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우 도태자료의 유량수준 상위 50%의 평균도태월령에서 살처분 당시의 월령을 공제하되 농가단위 유대 손실분을 보상받는 경우는 입식제한기간을 추가 공제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평가방법: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해당 개체에 대한 등록여부를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확인한 후 보상금액을 농협젓소개량사업소에 의뢰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젓소의 우유생산가치

-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해당 젓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증명한 평가대상 젓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일 평균 납유량(ℓ) $\times$ [(평가대상 젓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 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 당) 평균 생산비)]】
- 입식제한기간 :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서 준비기간을 가산하여 180일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지급기준: 젓소 사육 농가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신 유대손실분 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6~7개월초과 ~ 600kg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조사하는 한우 송아지 7개월령의 중간 표준발육체중 적용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 $\div$ (600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나. 600kg 초과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600kg
- 다.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고등등록우)
 - kg당 가격 = 한우 암소 2등급 전국평균 경락가격×한우 평균 지육율(59.7%)

비고 7. 인공수정센터(AI센터)종모돈(♂)보상금 상한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 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 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후보돈 일당 사육비
-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365일-후보돈 구입 시 일령
- * 후보돈 일당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의 170% ÷ 365일
- * 번식돈 사육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 중 번식돈 사육비 적용

다.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

-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도태가격) × 12% ÷ (정액채취전 사육기간/180일)
- * 후보돈 구입두수의 12%(추가사육기간 180일 기준) 인정

라. 감가상각비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종모돈 도태가격)/종모돈 내용년수×사용년수
-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 : 후보종모돈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손실비
- * 종모돈 도태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가격 적용
- * 종모돈 내용년수 : 1.5년
- * 사용년수 : (살처분 당시 일령-365일) ÷ 365일. (단, 사용년수≥0)

마. 정액잔존가치

- 정액잔존가치 = 연간 생산량 × 이용잔여년수 × 판매가 × 10%
- * 연간 생산량 : 1000두
- * 판매이윤 : 판매가의 10%
- * 이용잔여년수 : (2.5년 × 365일 - 살처분 당시 일령) ÷ 365일(단, 이용잔여 사용년수≤1.5)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자목 괄호 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관련)**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도태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중 젖소·육우·한우·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 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도축·경매·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단위 : 원/두당)

축종별	구 분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	비 고
젖 소	송 아 지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초임만삭	500,000	
	초 산 우	400,000	
	다산우(2-5산)	300,000	
	노산우·기타	200,000	
한우	임신우(초임단계이후)	4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300~499kg 이하(암·수)	200,000	
	299kg 이하(암·수)	300,000	
돼 지	모 돈	150,000	
	웅 돈	150,000	
소·중축 · 종돈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소와 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 기관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종계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	(주령별 가격-계육판매 대금) × 40%	종계의 주령별 가격 산정 - 산란용종계 · 27주령 : 생산비 + 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 병아리 가격의 1/4×10%] · 초생추 ~ 27주령 미만 : 초생추 상 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 단위로 산정

- 27주령 이상 ~ 78주령미만 :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 단위로 산정
- 육용종계
 - 31주령 : 생산비+ 잔존가치[종란 판매 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 \times 10\%$]
 - 초생추 ~ 3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 단위로 산정
 - 31주령 이상 ~ 70주령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 단위로 산정
- 토종닭 종계
 - 25주령 : 생산비+ 잔존가치[종란 판매 개수 188개× 병아리 가격의 $1/2 \times 10\%$]
 - 초생추 ~ 25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 단위로 산정
 - 25주령 이상 ~ 68주령미만 : 25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 단위로 산정
- ※ 초생추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육용) 기준 (산란·

			토종닭 종계 초생추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 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 계산서 기준) ※ 종계노계 : (사)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 가격(종계노계) 기준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u>한국사슴 협회</u>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염소	염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생산자 단체와 협의, 결정한 금액	

-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 종계 · 산란실용계 · 종오리 · 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지원액	살처분 두수(두)						
	한육우	젖 소	돼 지	사 육			혹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41~60	25~36	801~1200	81~120	41~60	17~24	81~120
상한액의 80%	31~40 61~70	19~24 22~42	601~800 1201~1400	61~80 121~140	31~40 36~70	13~16 25~28	61~80 121~140
상한액의 60%	21~30 71~80	13~18 43~48	401~600 1401~1600	41~60 141~160	21~30 71~80	9~12 29~32	41~60 141~160
상한액의 40%	11~20 81~90	7~12 49~54	201~400 1601~1700	21~40 161~180	11~20 81~90	5~8 33~36	21~40 161~180
상한액의 20%	10두 이하 91두 이상	6두 이하 55두 이상	200두 이하 1801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10두 이하 91두 이상	4두이하 37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 * 다수 축종 해당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상한액의 20%)중 적은 두수는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조정
- * 돼지 모든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구간 두수의10%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 부분매물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물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입식준비기간: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 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 다만,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방역지역내 추가발생 또는 사육동수가 많아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 이 경우 관할 시·군·구는 농가로 하여금 재입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닭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산란계 및 종계	8천수 ~ 12천수 미만	6천수 ~ 8천수 미만, 12천수 ~ 14천수 미만	4천수 ~ 6천수 미만, 14천수 ~ 16천수 미만	2천수 ~ 4천수 미만, 16천수 ~ 18천수 미만	0.5천수 ~ 2천수 미만, 18000천수 이상
육 계	16천수 ~ 24천수 미만	12천수 ~ 16천수 미만, 24천수 ~ 28천수 미만	8천수 ~ 12천수 미만, 28천수 ~ 32천수 미만	4천수 ~ 8천수 미만, 32천수 ~ 36천수 미만	1천수 ~ 4천수 미만, 36천수 이상

* 산란계 및 종계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토종닭은 육계 기준 적용

< 메추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 두수	32천수 ~ 48천수 미만	24천수 ~ 32천수 미만 48천수 ~ 56천수 미만	16천수 ~ 24천수 미만 56천수 ~ 64천수 미만	8천수 ~ 16천수 미만 64천수 ~ 72천수 미만	1천수 ~ 8천수 미만 72천수 이상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 소유자

-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卵) 생산 잔존 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가축등 소유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발 생 농 장	④ 소 재 지						
	⑤ 농 장 명			⑥ 축 종			
	⑦ 사육두수			⑧ 발생전염병명			
	⑨ 발생두수		⑩ 폐사두수		⑪ 살처분두수		
지 급 요 율	⑫ 지급기준						
	⑬ 지급기준 결정 근거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 가축위생시험소장] ○ ○ 군(시·구) 보상금평가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평가서

1. 평가대상

- 축종 :
 ◦ 소유자성명 :
 ◦ 농장소재지 :

2. 평가일자 :

3. 평가장소 :

4. 평가두수 : 두()

※ () 내에는 별표2[보상금평가액상한선]의 구분란에 의한 두수내역을 기재

5. 평가내용

개체번호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균액
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100 100 100

○○ 군(시·구)평가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평가자 개별 평가조서 3부 (평가조서에는 축종, 품종, 개체번호, 연령, 생체량, 평가액이 기재되어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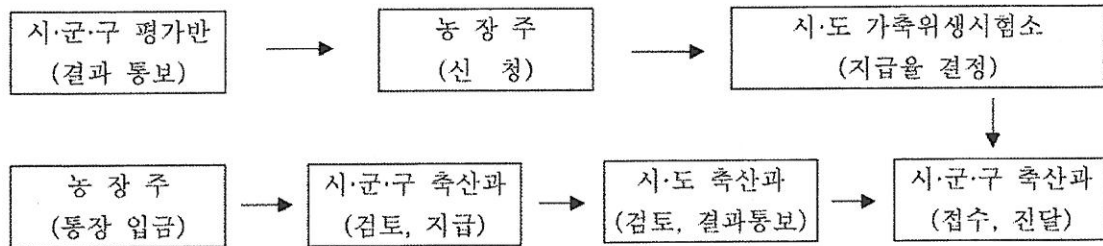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신 청 금 액									
⑤ 신 청 사 유									
⑥ 보 상 구 분		살처분 가축(우유생산가치)·죽은 동물. 유사산태아·소각매몰물건							
⑦ 세 부 내 용									
축 종	품 종	개체번호	성 별	연령(산차수)	생체량	평가액	신청액	비 고	
계									
살 처 분	⑧ 일 시								
	⑨ 장 소								
⑩ 소각 또는 매몰방법									
⑪ 이용물의 종류 및 수량									
⑫ 젖소 우유생산가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검사·주사·약육·투약증명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함) ② 살처분명령서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함) ③ 소각·매몰 확인서(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④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⑤ 보상금평가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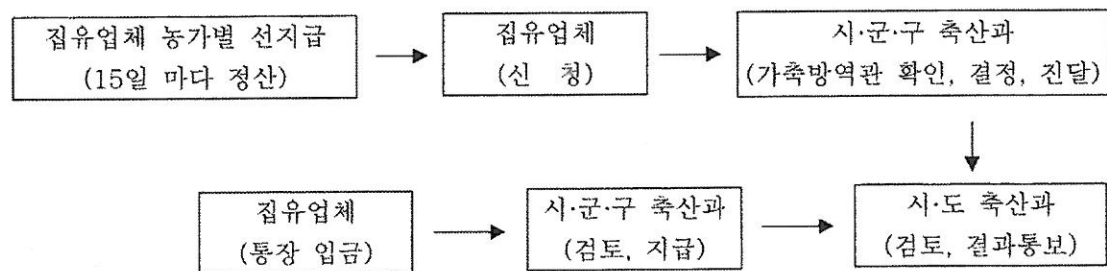
(뒷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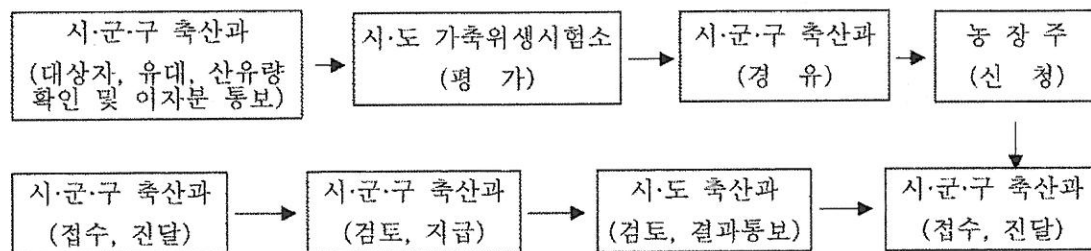
1. 살처분 가축 및 축산 기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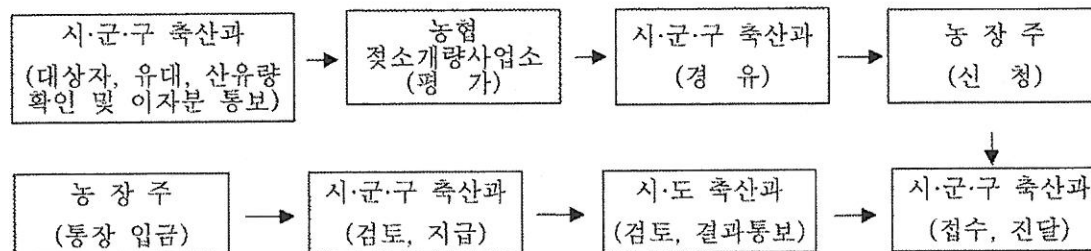
2. 이동제한의 폐기원유



3. 농가단위 우유 손실



4. 고능력 젖소 우유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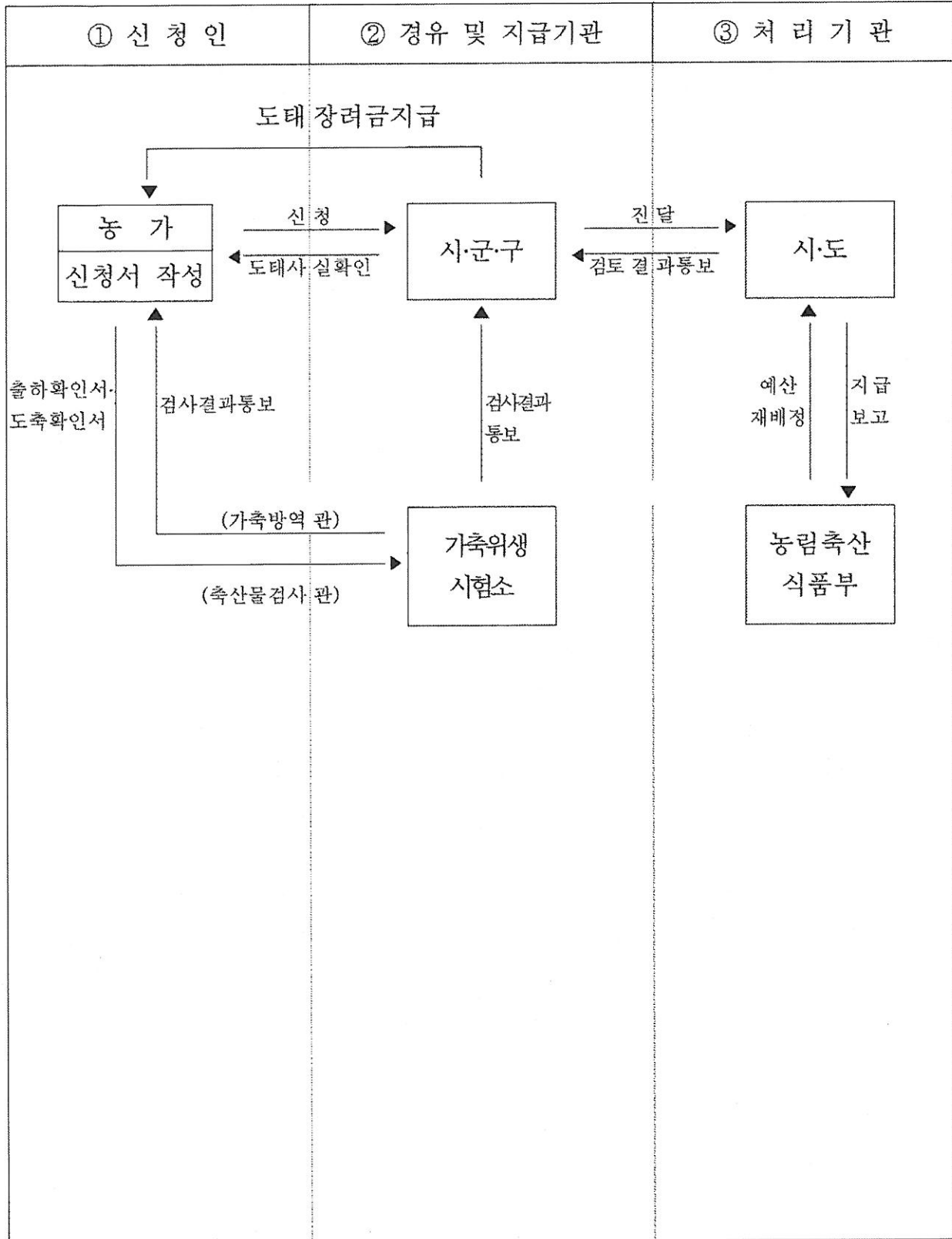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도태 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장려금신청금액					
⑤ 장려금신청사유		☐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와 함께 사육한 소의 조기 출하도태 ☐ 돼지오제스키병 항체 양성 모돈·조기출하·도태 ☐ 기타			
⑥ 세부내용					
축 종	품 종	개체번호	성 별	연 령	신 청 액
계		두			
⑦ 농장출하일				⑧ 도 축 일	
⑨ 도축장명				⑩ 도축장소재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도태권고서(도축장으로 출하한 경우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관이, 재활용시설로 출하한 경우 시·군·구 소속 가축 방역관이 도태사실 확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신청금액			
⑤ 세부내용			
축종		살처분두수	
살처분	⑥ 일시		
	⑦ 장소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살처분명령서 사본 ②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 사본			수 수 료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